의 안 번 호			제	호
의		결	2024.	•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아 동 ·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관계 서류, 증거물에 대해 열람·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열람·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,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·등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·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·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, 검사나 법원이 열람·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·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형사소송법,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0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0000호),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00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법률 제 호

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의 준용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례법」 제8조의2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 등의 열람·등사), 제8조의3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·등사)을 준용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
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9조(서류・증거물의 열람・등 제29조(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사)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관한 특례법 의 준용) 아동・ 피해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절차에는 「특정강력범죄의 처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8조의2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(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 에 대한 피해자 등의 열람 · 등 있다. 사), 제8조의3(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등 열람 · 등사)을 준용한 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				
연 락 처	02-2100-6405			